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갑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93

발의연월일: 2020. 6 25.

발 의 자: 송갑석·인재근·민형배

김원이・박 정・전용기

이용빈 · 신정훈 · 정춘숙

이장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지만, 에너지특화기업이 되기 위하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기업들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. 법의 목적을 감안해 볼 때, 에너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선도할 역량 있는 대기업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짐.

또한,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방세에 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지원은 연구·개발 지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

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, 에너 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(안 제14조제2호 단서·제14조의2·제14조의3 신설).

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호 중 "아니하는 기업"을 "아니하는 기업.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.

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우선구매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비율, 대상 제품 및 서비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.

제14조의3(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

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,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 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)	제14조(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)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	
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	
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	
춘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	
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「전기	
사업법」 제2조제4호의 발전사	
업자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	
정할 수 없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	2
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	
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	
속하지 <u>아니하는 기업</u> <u><단서</u>	<u>아니하는 기업.</u> <u>다만,</u>
<u>신설></u>	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
	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
	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
	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
	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.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14조의2(에너지특화기업 관련
	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)

<신 설>

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우선구매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 에 따른다.

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비율, 대상 제품 및 서비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.

제14조의3(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, 기업지원시설의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원을 하려는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.